

연천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

[2011. 11. 23]
조례 제3005호

일부개정 2023. 7. 13 조례 제3873호
(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
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, 사단법인 연천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연천군협의회, 연천군 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 연천군지부 및 하부조직과 그 읍·면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.
2. “새마을회원”이란,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.
3. “새마을사업”란,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,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
2.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·활동경비
3. 새마을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·훈련경비
4.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3. 7. 13>

제5조(보험가입) 군수는 새마을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의

연천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

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「연천군 포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7. 13 조례 제3873호,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
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